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특별사법경찰행정 수사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고 정 윤

2011년 2월

특별사법경찰행정 수사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남 진 열

고 정 윤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2 월

고정윤의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년 2 월

A Study on Improvement of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s
Investigative Power

Jeong-Yun Ko
(Supervised by professor Chin-Yeol, Na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dministration.

2011.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 방법	3
II.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4
1. 경찰의 의의와 개념	4
1) 경찰의 의의	4
2) 경찰의 개념	5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6
1) 형사소송법적 의의	7
2) 행정법적 의의	11
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11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작	11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요	12
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목적	13
4)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직무적 특성	14
5) 특사경법의 최근 개정내용	16
4.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근거 및 신분의 부여	18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 근거	18
2) 신분 부여의 방식	20
3)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일반적 검토	31
5.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32
1) 미국	32
2) 독일	33
3) 프랑스	36
4) 일본	37

III.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과 수사력 향상 방안	41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41
1) 수사업무에 대한 부적응	41
2) 수사권 경합의 문제점	42
3)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44
2. 특별사법경찰행정 수사력 향상 방안	47
1) 수사력 향상을 위한 우수자원 확보	47
(1) 전문 인력 채용 확대	47
(2) 전문 수사기관 파견 및 위탁교육	47
2) 수사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48
(1) 수사력 향상방안 강구	48
(2) 수사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52
3) 수사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52
IV. 결론	55
참고 문헌	57
부록	60
Abstract	84

표 목 차

<표 1>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의 구분	13
<표 2>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기준 및 관련 사례	16
<표 3>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수사관할	21
<표 4>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직원 종류 및 직무범위	39
<표 5>	범죄수사규칙 「제4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42



【국 문 초 례】

특별사법경찰행정 수사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오늘날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적인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유도하지 않는다. 현대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양적으로는 동기 없는 무분별한 범죄와 청소년범죄,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흉폭화, 집단화, 기동화, 광역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사기관인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각 전문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행정은 보다 질 높은 수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 교육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행정의 수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조직적 측면에서는 수사에 대한 전문화를 위해서 우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사기법 교육을 통해서 수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창조를 통해 국민중심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인 치안행정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수사 분야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공무원에게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행정 수사력의 강화는 국민의 인권 침해적·행정 규제적 측면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행

정수사가 전문화되어 수사력이 향상되면 당연히 그 이익은 국민으로 돌아 갈 것이며,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분발한다면 전문분야 수사 전문가로서 국민의 특별사법경찰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적인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유도하지 않는다. 현대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양적으로는 동기 없는 무분별한 범죄와 청소년범죄,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흉폭화, 집단화, 기동화, 광역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하여 경찰의 개념과 역할 또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형사사법의 독과점이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특성을 제대로 수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시민참여 내지 민간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사사법수요를 기존의 지식과 체계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기능이 형사사법기관에 요구되고 있다(신양균, 2007: 201).

경찰은 그 직접적인 목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한다.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산림경찰, 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이 포함된다. 사법경찰은 수사, 범인의 체포 등 국가형벌권에 의한 활동을 의미하며,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특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찰기관의 수사경찰관과 검찰청 등의 수사관이 행하는 수사 활동이 해당된다(양영철, 2008: 25-26).

형사사법기관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은 수사기관이다. 수사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

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를 인지하고 범인을 검거·조사하며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일련의 수사기관 활동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주체자라 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다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뉘어진다.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라고 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전문화된 기능별, 특수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한 관계로 전문적 지식에 정통한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이재상, 2000: 171).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전을 거쳐 광역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 지면서 현재의 범죄형태가 형법범 등 일반적인 범죄 이외에 행정의적 비대현상에 기인된 각종 질서법적 성격을 갖는 행정범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의 전문성, 효율성, 신속성, 당해 행정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해 장소적, 사항적인 제한 하에 사법경찰권을 행하도록 한 것이다(전현준, 2003: 35).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한국에서 초기에 일부분야에 있어서 범칙사건만을 다루고 있었으며 그 수도 10여종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50여 종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업무영역의 증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행정부서의 업무영역 확대의 욕구와 수사권의 추구경향과 각 행정부서들이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침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일반사법경찰의 수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해당부처 자체업무에 대한 권한의 확대욕구와 결부되어 특별사법경찰권의 요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일반사법경찰의 고유 업무과다로 인하여 해당 행정업무 수사에 적극적 불개입이 따른 결과로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영역은 점차 증대 되고 있다(민형돈, 2007: 40).

본 연구에서는 최근 더욱 활성화된 지방화시대와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질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고찰하고 특별사법경찰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로 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력 향상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인 특별사법경찰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대상의 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범위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와 개념·직무적 특성과 특별사법경찰수사의 전문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 근거 및 신분의 부여에 대하여 전반적 내용을 서술하였다. 또한 외국의 특별사법경찰관의 활동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현대사회의 범죄증가와 치안수요변화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의 치안체제 구축에 대해 범죄수사 인력의 체제미비, 수사요원의 조직적체제 문제, 범죄수사요원의 교육상 문제점과 특별사법경찰조직 운용상의 문제 등을 제기 하고 그 제도적 개선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강구해 보았으며

제4장은 종합적인 논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의 관련 서적과 전문기관의 연구보고서 그리고 관련문헌·정기간행물 등을 활용하였으며 또한 관련된 연구논문에 대한 고찰과 경찰청과 각종 공적 자료와 기존의 통계, 내부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행정 수사력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비록 표본집단을 통한 설문조사는 택하지 않았지만 특별사법경찰, 검찰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 문헌적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

II.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경찰의 의의와 개념

1) 경찰의 의의

(1) 경찰의 연혁

경찰(police; Polizei)은 그의 어원을 멀리 희랍어·라틴어(politia)에 두고 있는데, 당시 그것은 헌법 또는 질서 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하였다. 그 후 중세 독일에 있어서는 봉건영주의 통치권과 결부되어,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한 특별한 통치권으로서의 경찰권이 인정되었다. 당시의 경찰개념은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의 상태를 의미하였는데, 즉 경찰작용은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의 상태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였다. 양호한 질서에는 위험방지 뿐만 아니라 생활 배려와 복리증진까지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경찰의 임무에는 시민의 생활 배려와 복리증진을 위한 작용이 포함되어, 경찰이란 말은 국가작용 전체를 의미하였다(김남진·김연태, 2007: 255).

16세기에 들어와서는 경찰이라는 말은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게 되어, 경찰은 결국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하는 작용을 의미하였다. 이후 국가작용이 확대되면서 사법·군정·외교·재정 등이 분리됨에 따라 근대국가에 있어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직접 다루는 내무행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내무행정에 관한 국가의 임무는 그 후 더욱 확대되어, 당시로서의 복지국가를 의미하는 경찰국가의 시대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 뒤, 18세기 법치국가사상의 세례를 받아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공안 유지'에 한정되었는데,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주법, 1931년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 정해진 경찰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의 경찰개념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서구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도입된 것은 갑오경장(1894년) 이후의 일이다. 즉, 1894년 7월 30일 새로운 관제의 실시에 따라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內務衙門) 소속하에 경무청(警務廳)이 설치된 것이 그의 시초

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 police power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위생의 유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개인의 자유·재산을 규제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경찰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근대국가에 있어서 경찰(Police, Polizei)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을 의미함이 보통인데, 이러한 경찰개념은 각국의 실정법상의 경찰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행정경찰의 성질을 가진 것과 사법경찰의 성질을 가진 것이 포함된다. 나아가 법령이 실질적 의무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작용(예컨대, 복리행정에 속하는 작용)을 일반경찰기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2) 실질적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해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개념은 주로 경찰의 활동형식(Taetigkeitsform)에 착안하여 세워진 개념이며, 활동내용(Taetigkeitsgehalt), 즉 경찰의 기능·임무 면에서 볼 때, 경찰은 개인의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그것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경찰은 개인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주고 보호해 주는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종래의 경찰개념은 경찰의 자유 제한적 측면에 치중한 감이 있다.

한편 독일·일본 등 과거 경찰의 권력이 강대했던 나라들에서 제2차대전 후에는 그 기능이 축소되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임무’가 대폭 일반행정기관에 이양되었다(위생·건축·산업·경제경찰 등).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독일에서는 이른 혹은 제도상으로 종래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감시행정

(Ueberwachungsverwaltung)이라고 부르고, 그 중 조직법상의 경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만을 경찰(Polizei)이라고 하는 동시에, 기타의 행정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질적의미의 경찰을 질서유지행정(Ordnungsverwaltung)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학자 가운데에도 경찰을 일명 ‘질서유지행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즉 경찰은 개인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수사(criminal investigation)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유영현·김종오, 2008: 474).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인에 의한 범인의 발견·확보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활동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활동과 구별된다(사법연수원, 2007).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모든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는 물론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도 지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검사의 범죄수사상의 지휘권을 제도화하는 이유는 국가의 독점적 소추기관이기도 한 검사로 하여금 소추권자로 그 고유의 책임 하에 소추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누어져 있으나 모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정한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수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경찰활동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범죄행위의 완벽하고 신속한 사법적 행정집행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기초질서를 유지하는 사전적·사후적 질서유지 활동이라 할 수 있다.¹⁾

1) 형식적의 수사와 실질적의 수사
형식적의 수사 -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1) 형사소송법적 의의

(1) 일반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다. 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이고,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이다. 그 중 수사관은 검찰청 직원으로서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이 여기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위에 열거한 사법경찰관리 외에 다른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법」 제47조는 검찰주사 또는 검찰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검찰주사, 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사수의 보조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따라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만 있고 사법경찰리는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며 일반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한 이외의 자는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산림·해사·천매·세무·군사·소방·환경·노동 기타 특수한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이다. 그 직무담당자와 직무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각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회구조 또한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수사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특수분야의 범죄를 전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범죄 수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전문화된 수사요원의 확보와 이를 위한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 단속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수사(주로 형사소송법으로 규정), 합법성을 요구,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 추구

실질적의의 수사 - 범인은 누구인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기타 수사에 대하여 무엇을 명백히 할 것인가 하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 합리성을 요구, 형사소송법의 실질적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 추구

따라서 일반사법경찰관리로는 고도산업사회의 특수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수사상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전문화된 범죄를 단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책무는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사법경찰관리인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일반사법경찰관리와는 원칙적으로 권한에 있어 차이가 없지만 그 직무권한의 범위가 특수한 사항 또는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3)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경찰

정보수사권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태도는 기존의 수사영역(다시 말하면, 사법경찰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경찰수사권에 대한 위협의 하나로 이해되며 기존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연결되기 쉽다.

그러나 경찰이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하여 이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치경찰법안(정부안)」 제6조2)의 경우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근거로서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에서 “시·군·구의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이를 국가경찰관서에 고발하는 이원적인 업무처리로 비효율적이고 상호 불만이 많았으므로 자치경찰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단속과 수사가 일원화되어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한다는 것이다(행정자치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2008).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주요 고발 민원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컸던 부분이 자치경찰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는다.

-
- 2) 「자치경찰법안(정부안)」(의안번호 : 17-3205, 제출일자 : 2005. 11.3.), 제6조(자치경찰의 사무)
- ①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 2.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나. 교통법규 위반의 지도·단속
 -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시·군·구의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자치경찰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자치경찰제도를 이미 도입한 곳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곳이다.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내용은 「자치경찰법안」 제6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자치경찰법안」에서 보이는 경찰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은 종래의 수사영역에 대한 것이라면, 정보수사권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새로운 특별사법경찰 영역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수사영역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문 인력과 전문적인 장비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업무영역과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면서, 자치경찰을 통해서는 현재 불필요한 부담으로 적용하는 업무영역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수사 환경 속에서 기존의 사법경찰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연장선에서 경찰은 특별사법경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검찰

현행법상 전문영역과 관련된 수사에 관하여 검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나. 교통법규 위반의 지도·단속
 -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특사경법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 제5호(제5조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 제21호, 제22호,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28호, 제29호, 제31호, 제32호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거나

둘째, 행정기관의 제1차적 판단을 존중하여 그 고발을 기다려 수사를 하거나.⁴⁾

셋째, 신설된 전문수사자문위원회제도(형소법 제245조의 2 내지 3)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 점에서 효용이 있을까?

우선, 많은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확장은 사법경찰권의 수여와 함께, 그 소추기회를 늘린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통제수단의 확장을, 그리고 기소독점주의라는 제도적 차원에서 독점적 소추기관인 검찰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법개정 과정에서 제기된바, 특별사법경찰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뚜렷한 사전·사후 감독체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지적에 대하여 법무부는(법무부장관은) “일반 경찰관을 쓰나 특별 사법경찰관을 쓰나 하는 일은 같은 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사후 감독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에 의하여 일원화되는 체계에서는 검찰권의 행사방식은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이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들린다.

또한 법개정 과정에서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영역 확대에 인하여 새로운 인원이나 장비 등의 증가나 비용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해당부처의 입장이 반드시 그와 일치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해당부처에서는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한 업무량의 증가와 그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과 예산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특별사법경찰의 인적·물적 설비는 결국 형사소추라는 법무부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는 해당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인력을 늘려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한결 유리하다. 결국 특별사법경찰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집행권능을 우회적으로 확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 예를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등의 권한을 가진 세무공무원(「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내지 제4조), 그리고 선거범죄·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 또는 「정치자금법」 제52조),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수사권독립 논의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은 일면에서는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외곽에서 차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영역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다.

2) 행정법적 의의

행정법학계에서는 특별경찰행정기관의 권한 영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찰행정기관이 활동할 수 없고, 특별경찰행정기관의 권한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경찰행정기관에 권한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일반경찰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는 설명이 그것이다(홍정선, 2006: 351). 이는 작용법적 근거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별적 수권조항은 개괄적 수권조항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권한행사를 두고, 형사법과 행정법의 적용면에서 형사법적 측면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정영역의 직무의 특성상 발동될 수 있는 경찰권의 보충성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실질적인 작용법적 측면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경찰개념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두 영역에 대한 명확한 조직적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에 따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사소송법 체계상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행정영역에서 업무가 중첩되어 권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기관이 우선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행정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신분권을 이중적으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청의 행정활동(예방적 경찰활동)까지 담당하고 있다.

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작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유사한 형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체계가 개별 국가마다 상이

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일치된 형태의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우리의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⁵⁾ 일제강점기를 거쳐 상당수의 일본법이 우리 법제에 계수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제도 역시 이런 관계에서 그 시작을 엿볼 수 있다 (이근우, 2008: 92).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관련 규정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로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탄생하게 되었다.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요

전문성의 원칙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에 관한 범죄를 그 방면에 전문적 지식을 함양한 담당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범죄수사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범죄유형은 대부분이 특별범이며, 그 중에서도 주로 행정법상의 행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로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이다.⁶⁾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주로 행정법에 따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가 담당하는 범죄유형도 대부분이 행정법상의 행정범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은 고도로 전문화·기술화 되고 있어 이러한 행정법상의 행정범에 대한 수사는 상당한 행정적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을 별도로 두어 소관사무 업무와 관련된 특수 행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정의하자면,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범죄 이외에 행정의 복지 국가적 비대현상에 기인하여 각종 상시법적 성격

5) 일본의 경우 역시 형사소송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직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특사경과 유사한 「司法警察職員等定應指急措置法」을 제정하고 있다.

6) 현재는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9109호로 개정되어 법명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을 갖는 행정법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신속성·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한 장소적·사항적인 제한 하에 행정청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 경찰권을 행하도록 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1〉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구분

구 분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공통점	검사의 지휘·감독	반음	반음
	형사소송법 적용	반음	반음
차이점	직무범위의 제한	없음	있음
	수사관할의 제한	없음	있음
	분야별 예시	방법, 수사, 경비 등	철도, 환경, 산림 등

자료출처 : (도정석, 2006: 7).

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목적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별행정법에서 개별행정영역의 특성에 맞게 대상자와 소관직무의 범위에 관한 제한을 두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관련 연구 자료들은 광범위하고, 개별 특성이 강한 개별행정법 영역에서 일반경찰이 담당하기 곤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개별 행정영역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소관 행정청 혹은 개별 행정영역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등의 필요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인해 수사 작용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림·해사·전매·세무 등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칙 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에 감하여 부적당하고 심히 곤란하여 이 법은 형사소

송법 제79조에 기하여 이들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칙 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그 수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행정분야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그 부문에 있어서의 범칙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이들 특수 행정분야는 직접 담당 하여 그 부문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케 함이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때 수적으로 일반경찰이 현저하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이 개별 행정영역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김민규, 2008: 8-9).

4)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직무적 특성

이러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특별사법경찰법’이라 한다)의 직무적 특성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관업무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국가가 일반 행정기관에게 별도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관 업무에서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 활동만으로는 증거의 수집·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파악은 물론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사법경찰에 있어서도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김택수, 2004: 71-97), 개별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보다 해당영역에 대한 업무적 관련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법경찰의 수사 작용보다는 더욱 문제해결에 신속하고 용이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면 조세사범, 관세사범, 마약사범 등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소관업무에 있어서 업무현장과의 격리성

즉, 수용시설이나 운송수단 등 격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단속을 위해 필요

한 경우에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선박의 선장·항공기의 기장과 같이 공무수탁사인⁷⁾에게도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예를 들어 특별사법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 장과 소속공무원(제3조 제1항, 제5조 1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장과 소속공무원(제3조 제2항, 제5조 3호), 보호감호·치료감호시설의 장과 소속공무원(제3조 제3항, 제5조 4호),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5조 10호),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5조 11호), 국가보훈처(제5조 20호),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의 선장과 해원(제7조 제1항), 항공기의 기장과 승무원(제7조 제2항),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제7조의2)과 같이 일반경찰의 신속한 접근이 곤란하거나, 사법경찰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지역적·장소적 제약에 장소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행정구역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간적 제한만을 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소관업무상 긴급성 또는 현장성
즉,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위반사범의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현장단속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를 하면서 인지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채증을 통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 한 것이다.

넷째, 소관업무에 있어서 고도의 보안성
이는 국가안보 등 특정한 국가정책의 수행이나 특수한 분야의 수사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한정된 조직 내에서 최소의 인원만이 위법행위를 인지하여 위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사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공정한 자세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의 행정단속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행정조사와는 달리 강제조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로 수사에 착수

7) 선박의 선장을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것이 행정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독일의 경우 또한 그러하다.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형벌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야 한다. 즉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의 영장, 검사의 수사지휘, 자백 배제의 법칙 등 형사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편의상 입건을 하지 않고 행정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경우 위법한 조사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표 2〉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기준 및 관련사례

분야별 특성	기존시민	새로운 이주자
전문성 :업무의특수성, 전문성의 축적	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 사법경찰관의 효율적 수사가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권을 부여	출입국 관리, (선원) 근로감독, 식품의약품, 관세, 공중위생, 환경, 전기통신, 원산지 표시,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가축식물 방역, 청소년위원회 등
격리성 :격리된 장소에서 범죄의 예방	수용시설, 운송수단 등 격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권 부여	교도소, 소년원, 보호치료 감호소 등 수용시설 종사자, 등대공무원, 선장,항공기 기장, 철도 공안 등
현장성 :주로 현장 단속 공무원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사범의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특히 가까운 현장 단속이 필요한 경우 신속, 공정하게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 부여	산림보호, 문화재보호, 계량 검사, 공원관리, 어업감독, 광산 보안, 국가 보존, 차량 운영, 관광지도, 농약 비료, 하천 감시, 자동차 정비 등 단속 공무원
고도의 보안성 :국가안보 등	국가안보 등 특정한 국가 정책수행이나 특수분야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사법경찰관으로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권 부여	국가정보원 직원(국가안보), 군사법경찰관(군용물, 군사기밀), 대통령 경호원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15).

5) 특별사법경찰법의 최근 개정내용

(1) 대안의 제안경위

- ① 2009년 11월 24일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

었고, 2009년 12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②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③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4. 19.)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주요 개정내용

개정법률의 내용은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 등 침해행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신규부여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범죄와 도시공원 관리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이미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법무부·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직무근거법령 및 직무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특사경의 직무범위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사법경찰권의 신규 부여

개정법률에서 사법경찰권이 신규 부여된 공무원들과 그 권한을 적시하면 아래와 같다.

i)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법 제5조 제38호, 제6조 제35호)

ii)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법 제5조 제39호, 제6조 제36호)

ii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법 제5조 제40호, 제6조 제37호)

② 기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개정법률은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던 사법경찰권을 토대로 법무부·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직무 근거 법령 및 직무범위를 조정 확대하였다.

(3) 형법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확대

기존에 부여되었던 사법경찰권의 관할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는 “운용에 있어서는 수사권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신중한 집행이 필요할 것” 이라고 하여 수사권 남용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4.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근거 및 신분의 부여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는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사경법이며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법은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로 제정되어 최근 2010년 6월 4일 법률 10339호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부 15개 행정부 중에서 11개 행정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직·간접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행정부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체신청(특별사법경찰법 제5조 23호), 국가정보원(특별사법경찰법 제8조), 대통령경호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7조)과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와 국가보훈처(특별사법경찰법 제5조 20호)와 같은 국무총리직속기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 국립학교(특별사법경찰법 제5조 13호), 선장·기장(특별사법경찰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과 같은 사인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특별사법경찰법 제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특별사법경찰법 제10조)에 이르기까지 일반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전체 종류는 50여개의 개별 행정기관에 이른다.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2000년 6월 1일 법무부예규 제530호로 제정되고 2009년 11월 30일에 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유효기간은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⁸⁾ 해당하거나 퇴직하거나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8)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심의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부적격자로 본다.

1.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명철회 신청서에 지명서를 첨부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이 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회가 심의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분 부여의 방식

특별사법관리는 개별 행정기관의 특성상 혹은 직급의 차이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신분을 부여하고, 개별 직무영역에 따라 다른 방식의 임명방식 및 지명절차를 갖고 있다.

(1)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경우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또는 그 지소의 장(특별사법경찰법 제3조),
- ②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특별사법경찰법 제3조 제4항),
- ③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특별사법경찰법 제3조 제5

외 한다

2.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기소된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항),

- ④ 해선(연해항로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 2백석 이상의 것)의 선장과 행원 등(특별사법경찰법 제7조 제1항), 항공기의 기장과 승무원 등(특별사법경찰법 제7조 제2항)이 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3)지명을 필요는 없으나, 명단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법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군·구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받는 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그 외의 경우

특별사법경찰법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 동법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통령 경호실 소속의 공무원과 같이 기타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 등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지명절차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표 3〉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명 및 직무범위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검찰주사 및 서기보, 마약수사주사 및 서기보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	검찰청법 제47조제1항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요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각급 검찰청의별정직공무원 5급부터 9급 상당 공무원	"	검찰청법 제47조제2항	각급 검찰청 검사장 지명을 요함 (이하 지검 장을 요함)
교도소장, 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지소의 장	당해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 한법률(이하 "특 사경법"이라한 다)제3조 제1항, 제6조 제1호	지검장 지명을 요하지 아니함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에 종 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 공무원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형법 제1조 제1항 특사경법 제3조 제4항	지검장 지명을 요하지 아니함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지소장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특사경법 제5조 제1호, 제6조 제1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 검장 지명을 요함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 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당해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 설 안에서 발생하 는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1의2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분원(지원)의 장	당해원내에서 발생 하는 범죄, 또는 재 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 범죄발 생 후72시간내 체포 수사	특사경법 제3조 제2항	지검장 지명을 요하지 아니함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분원(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특사경법 제5조 제2호, 제6조 제2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보호감호소장, 치료감호소장, 지소의 장	당해감호소,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사경법 제3조 제3항	지검장 지명을 요하지 아니함
보호감호소장, 치료감호소장,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 까지 국가공무원	"	특사경법 제5조 제2의2호, 제6조 제2의2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4조, 제6조 제3호	지검장 지명을 요하지 않음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국립수목원·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단속사무를 전담하는 임업주사및 임업서기보	소속관서 소관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4조, 제6조 제3호	지검장의 지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명단을 보고하여야 함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특사경법 제5조 제3호, 제6조 제3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특사경법 제5조 제4호, 제6조 제3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소속관서 소관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4의2호, 제6조 제3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특사경법 제5조 제5호, 제6조 제3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	특사경법 제5조 제6호, 제6조 제3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과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소관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7호, 제6조 제3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특사경법 제5조 제15호, 제6조 제3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행정관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 위생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10호, 제6조 제6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행정관서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11호, 제6조 제7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소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12호 제6조 제8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철도청, 지방철도청과 그 현업 관서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 관서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현행범	특사경법 제5조 제13호 제6조 제9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14호, 제6조 제10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량 검사 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17호, 제6조 제1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p>문화재청, 그 사무소, 지구관리 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의까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p>	<p>소속 관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 구역 과 관리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 지정 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p>	<p>특사경법 제5조 16호, 제6조 제11호</p>	<p>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p>
<p>자연공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환경부, 시·도지사 및 군수)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p>	<p>관할 공원 구역 및 공원 보호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p>	<p>특사경법 제5조 18호, 제6조 제13호</p>	<p>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p>
<p>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p>	<p>소속 관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 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 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범죄수은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p>	<p>특사경법 제5조 제198호, 제6조 제14호 관세법 제295조</p>	<p>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p>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 감독공무원	소속관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20호, 제6조 제15호 수산업법 제63조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 보안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21호, 제6조 제16호 광산보안법 제21조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국가보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국가유공자등에우 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22호, 제6조 제17호 국가유공자등에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81조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	특사경법 제6조의2제1항 근로기준법 제105조및제108조	지검장 지명을 요하지 아니함
지방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근로여성보호 등의 업무에종사하는 국가공무원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	특사경법 제6조의2제2항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선원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	특사경법 제6조의2제3항 선원법 제116조 및 제117조	지검장 지명을 요하지 아니함
해항(연해항로 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함으로써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 2백석이상의 것)의 선장은 사법경찰관 사무관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관	당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사경법 제7조 제1항	선장은 지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해원은 선장의 지명을 요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항공기 기장은 사법경찰관, 승무원 중 기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	당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사경법 제7조 제2항	기장은지명을 요하지아니하나 승무원은 기장의지명을요함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 위생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 법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23호, 제6조 제18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지칭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자연환경보전법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 먹는물 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생활 공간 공기 질관리법 - 수도법 (제61조제1호에한한다) - 지하수법 (제37조제7호에한한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한한다)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특사경법 제5조 제24호, 제6조 제19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애기구·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복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중 무선설비·전자파장애기구·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26호, 제6조 제21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 6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27호, 제6조 제22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28호, 제6조 제23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 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29호, 제6조 제24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 국립수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30호, 제6조 제25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지식경제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31호, 제6조 제26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지식경제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 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5조 제3호 내지 제5호의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32호 제6조 제27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33호, 제6조 제28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34호, 제6조 제29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 방역관 또는 검역관을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35호, 제6조 제30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 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38호, 제6조 제35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 및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자동차정비법, 자동차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에 관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36호, 제6조 제31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명	직무범위	근거법규	지명여부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특사경법 제5조 제37호, 제6조 제32호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사법경찰관,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동법 제1조 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현행법	특사경법 제7조의2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추천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수산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	어업자원보호법 위반범죄	어업자원보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한 지검장 지명을 요함 (단, 해군장교, 사병은 지명 불 필요함)
대통령경호실소속 경호공무원중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의 직무수행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	대통령경호실법 제7조	대통령경호실장의 제청에 의한 서울지검장 지명을 요함
국가정보원직원(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특사경법 제8조, 국가정보원법 제16조, 군사법원법 제43조 제3호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을 요함
군사법경찰관리(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 헌병인 병은 군사법정리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 병은 군사법경찰리)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범죄	특사경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제46조제1호, 동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 제2호,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군사기밀보호법 제22조	지검장 지명을 요함

자료출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함.

3)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 검토

(1)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취지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는 일견 모순되는 두 가지 시선 내지 인식이 있다.⁹⁾ 우선 특별사법경찰이 본래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적 또는 지역제 제한을 붙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박균성, 2007: 474) 혹은 해당 행정분야의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 (신태현·이용상·도정석, 2006: 426)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입장은 특별사법경찰을 특별행정범(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한 행정수요의 증대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의 영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충될 것이며 또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수요의 증대를 특별사법경찰의 확대의 가장 큰 동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복지국가적 특성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따라 일반사경과 별도로 독자적인 위상과 가치를 가진 존재이며 그 인정근거는 행정적인 “전문성”에 있게 된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권이라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면 특별사법경찰은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에 있어 “효과적이고 적정한 수사”를 위해서 일반사경의 전문지식의 부족을 보충하는 제도가 된다. 특별사법경찰을 기존의 사법경찰권을 보충하는 제도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인정근거로 전문성보다는 “지역·적용대상의 제한성”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특별사법경찰의 신설이나 그 권한확대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2) 제도운영의 현실

그러나 제도의 운영현실은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이론적 설명내지 이념형과는 사뭇 다르다.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행정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9) 이하의 설명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이해하는 두 가지 이론적 원형을 제시한다는 차원의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을 다룬 대부분의 문헌들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언급한다. 그러면서도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다 더 강조하면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위 논의의 지형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사의 미숙 내지 무관심과 수사권의 남용가능성이다.

첫째,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보다는 ‘단속’에 치중하여 단순히 단속결과를 경찰·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위험하면서도 번거로운 ‘수사’ 활동을 하기보다는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고 이를 위한 ‘범죄의 인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 ‘잡은 인사이드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의 결여’, ‘일반 행정업무와 겹침하고 있어 특별사법 경찰 업무에 대한 소홀과 무관심’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일부 특별사법경찰의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사권의 남용문제이다. 적극적 남용의 경우, 즉 적극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빌미로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¹⁰⁾¹¹⁾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의 행위방식과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방식이 중첩됨으로써 나타나는 소극적인 남용의 경우, 즉 “행정조사와 수사의 차이”를 간과한 수사 활동의 경우가 있다.

5.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1) 미국

(1) 미국 경찰의 이해

미국은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지방자치제 경찰국가로 볼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는 대륙법계의 경찰제도와 달리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 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이운근, 2001: 177). 이러한 지방자치제 경찰조직의 장점은 국가경찰제에 비하여 지역민과의 교류가 쉽고, 지역사회에서의 범죄특성 등의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범

10) 이는 2004년 당시 정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점이며, 2008년 입법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제273회-법제사법소위원회, 제1차 18면(김동철 법제사법 제1소위원장의 지적), “방통위에 이런 수사권을 주기전에도... 그 방통위 실무자가 옥션에 전화 걸어 가지고 그 계정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수사권을 주기 전에도? 그러면 그만큼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수사권까지 주게 되면 그만큼 그런 피해는 더 커지는 것 아니요?”

11) 이는 특별사법경찰이 새로이 사회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수사권이나 국정원의 보안수사권에서의 논의가 이를 반영한다.

죄, 교통 등의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우리와 같이 국가기관의 하나로써 명확히 분류되는 경찰조직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행정기관(전승수, 2007: 73)과 자치단체에 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어, 여러 기관간의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며, 광역화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대처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¹²⁾

(2) 미국의 특별사법경찰

미국의 특별사법경찰은 연방경찰 및 주경찰관과 같이 지방정부의 한계에 대응하는데서 발전하였다.

① 연방 특별사법경찰(Special Agents)

미국 연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무성 소속으로, 마약청에 근무하는 마약 특수요원, 연방범죄수사국(FBI) 특수요원, 연방 법원 판사·증인·죄수 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요원, 국경 지역 밀수 및 밀입국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 등이 있고, 재무성소속으로, 불법 무기 거래, 주간의 담배 밀수, 무자료 술 거래 등을 감시하는 술·담배·무기국 특수요원, 관세 없이 밀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세관원, 탈세를 방지하는 국세청 요원, 대통령·부통령과 그 가족들, 전 대통령, 내방한 외국인 등의 경호를 담당하거나 연방 화폐 및 채권위조, 신용카드 사기 방지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비밀업무 수행 특별요원 등이 있다.

② 주 특별사법경찰(State Peace Officer)

미국 각 주에서는 보안관을 두어 일반 경찰의 업무를 대신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관에는 농촌 또는 경찰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고 법령의 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안관, 주지사가 선임하여 철도 회사의 철도를 지키는 철도공안, 세금 관련 수사권을 가진 세무조사원, 공공안전부에 근무하는 마약조사원, 자연 광물을 보존을 위한 자연 자원부 소속의 공원 보안관, 병원보안관, 공공 재단 보안관, 주립대학교 보안관, 회계 감사 조사관,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있다(환경부, 2005).

2) 독일

12) 미국의 경우 연방범죄수사국(FBI)과 같이 연방계 수사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1) 독일 경찰의 이해

근대 초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을 지배하던 정치이념은 국가 절대주의였다. 국가 절대주의가 형사재판에 반영된 것이 규문주의의 확립이다. 규문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러한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관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 반면 수사 및 공소기관으로서의 오늘날과 같은 검찰제도는 이 당시에는 없었다(성기현, 2006: 28-40).

즉,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절대국가 초기에는 독일도 규문법관이 수사의 책임자였고 오늘날과 같은 검찰제도는 없었으며, 14세기 이래로 국왕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했던 프랑의 "procureurs du rol"에서 유래한다.

물론 독일에서도 검찰의 전신에 해당되는 "Fiskal"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절대적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 규문법관에 대신하여 일종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제도의 도입에 참고가 된 것은 프랑스 나폴레옹에 의한 治罪法에 이미 상당히 합리화 되어 규정된 대관제도였다. 특히 이 제도는 1798년 나폴레옹의 통치하의 라인강 좌안지역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 후 1831년 Baden, 1841년 Hannover 등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검찰제도가 창설되었다.

또한 새로운 검찰제도는 단순히 왕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로써가 아니라 공정한 법의 감시자로써의 지위로 요청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제국형사소송법과 제국법원조직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양자의 조직적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 실질적 이유를 Mittermaier는 "활동의 자유와 구체적 사례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재량권이 경찰관청에 보장 되지 않는 지위에서는 양질의 경찰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이 있어왔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불확실하게 두었다" 라고 추측하고 있다. 제국형사소송법의 제정 이후에 여러 차례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검찰의 근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위 1879년의 규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손동권, 1993: 194-197).

수사절차에서의 독일경찰을 살펴보면 독일 형사소송법에 나타나 있는 경찰의

구분은 경찰관청, 일반경찰 및 법원조직법 제152조가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보조경찰의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검찰의 보조경찰의 대표적인 것은 범죄경찰이고 기타 보호경찰, 질서경찰, 철도경찰 및 산림경찰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독일에서의 경찰임무의 하나는 위협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이며, 또 다른 경찰임무는 범죄수사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규명하여야 하며, 사건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체가 없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은 수사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할 의무도 있다. 경찰에 대한 이러한 수사의무의 부과는 법정주의를 경찰에게도 실현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그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다수설은 경찰에게 초동수사권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후에 경찰은 긴급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의 지시에 의해 활동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 지시는 일반 경찰관청에 대해서는 촉탁의 방법으로, 일반경찰에서는 위임의 형식에 의한다. 어떠한 지시이든 모두 구속력이 있다. 즉,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검사의 이러한 촉탁 및 위임에 응할 의무가 있다. 경찰관청이 검찰의 촉탁에 응하는 방법은 촉탁 받은 수사를 실제적으로 행할 개별경찰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제한된 범위에서 검찰은 특정경찰, 검찰의 보조경찰을 선택하여 명령형태의 지시를 발할 수 있다.

독일 경찰이 다툼 없이 확정적으로 가지는 초동수사권 이외에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경찰과 검찰의 보조경찰이 공통으로 가지는 강제처분으로는 감식처분권, 신원확인권이 있다.

독일의 경우 검찰이 수사 및 수사지휘 권한을 보유,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시를 인정하였으나, 독일은 2000년 11월 개정으로 경찰의 초동조치권에 관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추가하게 되었다.¹³⁾

13)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서 자치권이 강하여 각 주는 하나의 국가와 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제도 역시 주 단위의 국가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규명해야하며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법경찰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 및 수사기술의 발달로 인해 독일에서는 경찰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독일의 과학수사전문화의 경우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유사한 연방범죄수사청으로 조직되어 특별한 경찰사무를 연방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의 과학적 전문화는 경찰이 요구에 대하여 법 과학 분야의 전문보고서들을 작성하여 원함으로써 수사경찰관의 부족한 과학적 지식을 원조하고 있다.

(2) 독일의 특별사법경찰

독일경찰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에게 패한 후 영국, 미국, 프랑스의 경찰제도를 모방해 이른바 자치제경찰을 가미하여 적극 활동해 왔다. 그러나 독일이 원래 대륙법계 법질서의 중주국인 만큼 국가경찰제도를 대부분의 주(州)가 채택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집행경찰과 보안행정 업무를 가급적 분리해서 운영하는 독일의 주는 집행경찰만을 경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시켜 왔다. 가령 건축이나 산림, 위생 등의 보다 실질적 경찰업무는 주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신현기, 2005: 151).

집행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주에 따라 다르며 분리 운영하고 있는 바이에른, 쉘레스비히-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등은 집행경찰만을 경찰개념에 포함시키고 그 밖의 실질적인 경찰업무는 주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행한다. 반대로 통합 운영하는 브레멘, 라이란트-팔츠, 바덴-뷔르템부르크 주 등에서 경찰은 집행경찰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실질적 업무를 경찰관청에 포함시키고 있다(이윤근, 2001: 339).

3) 프랑스

(1) 프랑스 경찰의 이해

프랑스 경찰¹⁴⁾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기능을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경찰은 일반 경찰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경찰작용을 담당하고, 사법경찰은

14) 프랑스의 경찰체계는 19세기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계를 바탕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의 현행 경찰조직은 국가경찰, 국가헌병대, 지방경찰로 나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필요한 논의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경찰의 예방활동영역을 넘어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의 수집을 담당하며, 범인의 처벌을 담당하는 법원에 이를 인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이윤근, 2001: 282). 프랑스의 경찰체제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이종화, 2002: 236).

(2)프랑스의 특별사법경찰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사법경찰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요원과 사법경찰보조원, 3. 법에 의하여 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특별사법경찰제도로써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사법경찰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행정경찰에 속하지 않는 특정한 기관의 공무원이 그 기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백원기, 2003: 229-230).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농림부에 소속된 산림·치수전문요원·기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원감시원은 신문조서를 통하여 산림수지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범죄의 진상을 규명할 권한이 있으며, 임무수행 과정에서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특정한 사법경찰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 등기소공무원, 우편공무원, 근로감독관 등으로 7가지의 직무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프랑스형사소송법 제29조에서 과거에는 사법경찰의 하부관리로 여겨졌던 수렵과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특별감시원을 사법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감시원은 그가 관리하는 소유지에 피해를 입힌 모든 범죄의 진상을 신문조서를 통하여 규명할 권한을 가진다(백원기, 2003: 229-230).

4) 일본

(1)일본 경찰의 이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과 검찰청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직무로서 수사권한이 부여된 수사관으로 검사, 검찰사무관과 사법경찰직원이 있다. 우선 검

사, 검찰사무관은 검찰청의 직원이고, 사법경찰직원은 그 이외의 관서의 직원이다. 사법경찰직원은 일반경찰직원과 특별경찰직원으로 분류되어 경찰관은 전자에 속하고, 산림·철도 등의 특별사항에 대해 수사직무를 행사하는 특별행정청의 직원이 후자에 속한다. 그 이외 사법경찰직원은 아니지만 수사권한이 있는 것으로서는 국세청감찰관, 철도공안직원 등이 있다.

형소법 제189조 제2항은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1조 1항은 “검사는 필요가 인정되는 때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법경찰직원과 검사는 각각의 독립의 수사기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사법경찰직원과 검사가 수사실무에 있어서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과, 수사는 사법경찰직원이 제1차적이고, 검사가 제2차 기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경찰직원의 수사는 “본래적”인 것이고, 검사의 수사는 “보충적·보정적”인 것으로 수사권에 대한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과학수사 전문화의 경우는 경시청 3대 부속기관인 경찰대학교, 과학경찰연구소, 항공경찰본부 중의 하나로 과학경찰연구소로 소속되어 과학수사의 전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에 경찰법의 시행과 1949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더불어 범죄수사에서 물적 증거를 중요시하는 과학수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54년에 신경찰법의 시행과 더불어 과학수사연구소는 경시청의 부속기관으로 되어 범죄수사의 과학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 및 감정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게 되었다.

(2) 일본의 특별사법경찰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직원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수사 활동을 하는 특정의 행정직직원이다. 특정직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특정의 범죄에 대하여 경찰관보다도 이것을 발견할 기회가 많고, 또 직무상의 직업·경험으로부터 수사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사법경찰직원은 범죄수사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직원의 보충적인 면과 동시에 독자성을 갖고 있으나, 그 수사권한은 특정사항 또는 장소에 한정되어 있고 권한 행사 방법도 제한되어 있다(김형만, 1996: 48-50).

①종류와 직무범위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종류와 직무범위에 관해서는 사법경찰직원등응급조치법 제1조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의 지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별개의 법률의 규정에 규정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법경찰직원은 아니지만 특정사항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고, 특별사법경찰직원에 준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국세청감사관이 있다. 이는 대장성설치법 제37조, 국세청감찰관이 행하는 수사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에 의거한 것으로서 국세청직원에 관계있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이는 강제 수사권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수사관의 직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다(김형만, 1996: 48). 일본 형사소송법 제190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법률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직원 종류 및 직무범위는 <표 4>와 같다.

<표 4>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직원 종류 및 직무범위

직명	근거법규	직무범위
형무소장, 동지소장 및 지명된 직원 수	사법경찰직원 등 지정응급조치법	형무소의 범죄
영림국서의 직원	"	국유림업, 부분임, 공유임야간행조립 그 임야의 산물 또는 그 임야나 국영엽구의 수렵에 관한 죄
공유임야의 사무를 담당하는 북해도관리로 지명된 자	"	북해도의 공유임야의 산물 또는 그 임야에서 수렵에 관한 죄
선장 그 외의 선원	"	선박내의 범죄
왕궁 호위관	왕궁 호위법 제3조	왕궁
수렵 단속사무를 담당하는 도도부현 리원으로 지명된 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나 동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소령 또는 도도부현 규칙에 위반하는 범죄
노동기준 감독관	노동기준법 제102조	노동기준법 위반의 죄
선원 노무관	선원법 제108조	선원법, 노동기준법 및 선원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위반죄

직 명	근거법규	직 무 범 위
해상보안관 및 해상보안관보	해상 보안청법 제31조	해상의 범죄
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	마약단속법 제54조	마약단속법, 대마단속법, 아편법, 각성제단속법에 위반하는 죄, 형법 제2편 제14장에 정한 죄 또는 마약·아편·각성제 중독에 의하여 범한 죄
우정감찰관	우정성설치법 제31조	우정업무에 대한 죄
광무감독관	광산보안법 제37조	광산보안 위반죄
어업감독관 및 어업감독관원으로 지명된 자	어업법 제74조 제5항	어업에 관한 죄
자위대 경무관 및 경무관보	자위대법 제96조동법 시행령 제10조	① 자위대원이 범한 범죄나 직무에 중사중인 자위대원에 대한 죄, 그 밖에 자위대원에 대한 자위대원 이외의 자가 범한 범죄 ② 자위대가 사용하는 선박·청사·영사 그 외의 시설내의 범죄 ③ 자위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범죄

자료출처 : 김형만·신현기 외 7명, 2007: 170-171).

② 수사권의 행사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수사권은 위와 같이 특정사항 또는 특정의 장소에 한정되어 있다. 즉, 사물관할 또는 토지관할의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수사방식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수사가 인정되는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사법경찰직원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수사권은 경합적으로 존재한다(김형만·신현기 외 7명, 2007: 170-171).

Ⅲ.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과 수사력 향상 방안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1) 수사업무에 대한 부적응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직무의 특수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관’을 부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경찰과 달리 체계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활동을 펼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수사 활동에 있어서 수사 활동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안 하나 하나에 현실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적, 절차적 타당성에 충실하게 부합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예견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체포, 체포영장 처리, 구속영장 신청 등과 같은 강제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실행과정에 있어서도 형사절차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문제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민형돈, 2007: 61). 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관련 직무의 교육이나 경험, 빠른 보직이동 등의 다양한 이유가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14호)에 의하면 제9조(교육) 규정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고(동조 제1항),¹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은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비교적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발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4주간의 직무교육과 2주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짧게는 6

1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530호)로 개정 전에는 매년 2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나마 2003년 12월 24일 개정을 통해 1회로 축소되었다.

개월부터 1년간의 실무교육과 근무환경에서 끊임없이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반경찰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2) 수사권 경합의 문제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단속하고 조사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제한적이나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단속하고 조사할 수 있는 직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한 사건을 동시에 인지하여 단속하게 될 경우를 수사권행사의 경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에 규정하고 있다.¹⁶⁾ 범죄수사규칙 제4절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사규칙 제40조에서 제43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범죄수사규칙 「제4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와의 관계」

범죄수사규칙 제40조(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앞서서 알았을 경우에 그 수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 그 전문적 지식에 의한 조언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존중해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이송하는 경우) ① 전조의 경우에 그 수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인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급속을 요하는 조치를 한 후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신속히 필요한 수사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를 인계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를 위한 협력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를 위한 협력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건이 다른 범죄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는 기타의 이유로 경찰관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인수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

16)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훈령 제514호로써 사법경찰관리인 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수사의 방법, 절차 기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 때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①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있어서 그 수사가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수사를 하는데 있어 직접 수사하는 경우와 이송하는 경우, 인계를 받았을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어떻게 공조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수사권 조정을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규칙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의 이유로” 라는 불명확한 규정을 사용하여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 간에 떠넘기기식 업무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주민을 위한 치안행정은 어렵다고 보여 진다.

무엇보다도 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범죄수사규칙 제43조가 수사가 경합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43조 제2항에서는 검사의 조정을 통해 수사권 경합문제를 해결하라고 규정하면서도 조정 개시 사유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결국 임의 규정 형태로 규정하여 정작 수사권을 일반사법경찰관리가 가져야 하는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지진숙, 2008: 108).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 논의되는 편의주의는 경찰기관이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논의 된다. 그러나 본문과 관련된 ‘편의주의’ 는 경찰 편의주의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수단의 용이성’ 이라고 논의 되는 순수 행정학적·사회학적 견지에서의 ‘편의주의’ 를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우리의 법제에서 경찰행정법상 경찰권 발동에 관한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형화, 특정화시킬 수 없는 범죄의 유

형 및 위해 등 경찰작용의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갖는 문제점은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 직무에 있어서 발견된 범죄에 대하여 일반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정도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이러한 형태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 및 개정의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영역의 특수성’ 과 ‘단속 및 범죄 수사의 신속성’ 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김민규, 2008).

이는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인 수사권한의 부여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일반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이 다소 무분별하게 부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법률의 개정이나 입법을 주도하였던, ‘제도화된 행정국가’ 에 속한다. 그래서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행정부의 편의주의적 형태로 지적되고 있다. ‘사법경찰권’ 을 보유한 행정기관은 권한의 부여로 인한 행정상 의무(올바른 권한행사)의 이행보다는 행정작용 과정에서 일반 행정권의 한계를 강제력 혹은 공권력으로서 위화력을 갖는 사법경찰권의 확보를 통해 행정목적달성의 편의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한국경제, 2004. 6. 17).

반면에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는 수사권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 그 조정을 위한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 사이에 협정이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수사권 경합의 문제를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라는 이유로 검사에게만 일임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협정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적극적인 조정도 필요하다.

3)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1) 세계화에 따른 범죄증가

현대사회는 국제적 협력과 함께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과 언제 어디서든 원하면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로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양산한 것은 아니며, 범죄의 진화도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국제성으로 인하여 일반 범죄의 경우 그 수법이 지능화, 흉폭화, 광역화 되었다. 또한 외국인범죄와 관련해서는 신종범죄를 유입시키거나 한국의 기존 범

죄를 진화시켜 외국과 연계시키는 등 치안수용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에 따른 범죄 양상을 파악하고 대처할 방안을 모색할 물리적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특정범죄에 대한 대처와 수사기법의 전문화 구축하기 힘든 실정이다.

(2) 범죄수법의 진화

또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10년 5월 기준 약3,701만명으로 2000년 1,904만명에서 10년간 51%증가하였으며(파이낸셜 뉴스, 2010. 9. 29),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2010년 8월 기준 1,690만명을 넘는 등 명실 공히 세계적인 정보화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을 악용한 해킹·악성코드 유포행위, 인터넷을 통한 청부 살인, 장물·마약거래행위 등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수법 측면에서도 그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특정범죄에 맞춘 수사기법들이 개발되고 이후 사용될 시기에는 그 형태가 바뀌거나 수법 혹은 대상 등이 변화되어 일정한 수사전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3) 범죄발생에 예측불가능성

범죄수사는 그 특성상 범죄가 발생된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수사할 수 없고 신중 범죄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규정 역시 범죄로 규정되기 이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이 모든 범죄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들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특정분야의 전문화를 이루기란 어려우며,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일어나는 범죄의 발생과 진화를 막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①인력적 측면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판은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운영현황 및 각종 자료를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업무는 그 특성상 관

런 있는 기관과 정보의 공유 및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민형돈, 2007: 63). 그러나 제한된 직무범위와 공간영역에서 수사 작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정보 및 증거의 보전, 수색을 위한 전문성 등의 제도적 지위는 담보되어 있지 않다. 수사 작용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은 검사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의 달성 및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②제도적 측면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많은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종래 일반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했던 것은 개별 행정영역의 공무원이 갖고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 증거수집 등의 사법경찰활동을 용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우리 현실에서 ‘사법경찰관’이라는 권한이 갖는 특성상 일반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기관의 편의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제시할만한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부여의 확장만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거는 학문적 관심과 연구의 부족 등을 이유로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둘째, 사법경찰관의 부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형사소송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이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개별 행정업무의 전문성만 있을 뿐,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에 관한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음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 역시 불충분하였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의 정립도 없이, 많은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해야 할 행정법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형해화가 우려되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존의 수권방식 및 논의는 단순히 법적 구속, 법의 최고성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형식적 합법률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법

규범의 창설과 유지를 지향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민규, 2008: 38).

2. 특별사법경찰행정 수사력 향상 방안

1) 수사력 향상을 위한 우수자원 확보

전문성이라 함은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한가지의 업무를 집중하여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후임자에게 전달하고 그 후임자는 다시 더욱 발전시키는 그러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행정기관에서 사법경찰 업무는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업무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 활동 대부분이 수사업무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인력에 대한 수사전문화를 이룩하는 것이 곧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전문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채용 확대

기존의 행정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효과 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양상을 감안해 볼 때 범죄수사 분야에 대한 전문가 특별채용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범죄학, 과학수사론, 수사론, 형사법, 체포술 등의 과목을 이수한 경찰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채용의 신설 미생물학, 화학, 물리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의 확대, 회계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수사요원의 특별채용의 신설 등을 확대·시행함으로써 전문화를 추구 하는 특별사법경찰 수사력 향상에 필요성이 대두 된다.

(2) 전문 수사기관 파견근무 및 위탁 교육

행정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은 행정업무영역과 너무도

다른 업무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상 경찰공무원도 일반인을 공채하고 자체 양성하여 유능한 수사관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행정공무원 역시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각 분야 우수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본다면 전문 수사기관에 장기간 파견근무를 병행하게 하여 업무의 자연 습득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한다.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14호)에 의하면 제9조(교육) 규정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고(동조 제1항),¹⁷⁾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은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 외에 해당관서의 수사업무를 감찰할 때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비교적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발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4주간의 직무교육과 2주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짧게는 6개월부터 1년간의 실무교육과 근무환경에서 끊임 없이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반경찰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연수원 또는 경찰종합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검·경 수사관 양성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여 진다.

2) 수사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1) 수사력 향상 방안 강구

민간에서 보면 검사들은 수사경찰에 비해 소수이지만 경찰이 전담하는 즉결사범 이외에 입건된 모든 사건을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전부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단서를 찾아내 범인을 추격하거나 격투 끝에 범인을 검거하는 사실상의 수사 활동을 검찰청 검사들이 강력계 형사들보다 더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란 이러한 물리적인 수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건처럼 비록 의학에는

1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530호)로 개정 전에는 매년 2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나마 2003년 12월 24일 개정을 통해 1회로 축소되었다.

정통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의료기록 확보하는 방법 또는 조세포탈사범이나 금융사건의 경우 자금추적이나 돈세탁의 기법 등을 포함하여 각종 범죄에 특이한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한 것이다(황정익, 2002: 10-11).

또한 수사사례 및 조사방법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판사나 검사, 변호인들이 재판실무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판례의 내용이다. 즉 축적된 판례를 통해 법해석의 기본방향을 실무자들이 예측할 수 있듯이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도 일선현장에서 취급한 사건들이 체계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다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유사한 사건을 수사한 기록을 참고로 할 수 있다면 특별사법경찰관 입장에서는 판사에게 판례가 중요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도 중요한 사건의 경우 사건개요, 피의자의 인적사항, 수사의 방향, 적용된 법조, 검거 및 구속 여부, 사건 처리 시 애로사항, 수사 실패 또는 성공의 직접적인 상 등을 요약하여 전산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 특이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만큼 전문적인 교육 자료로 적절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집대성시키는 작업이 특별사법경찰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 중의 하나라 하겠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별사법경찰의 개별영역부분에서 만큼은 국내외의 어떤 수사기관보다 뛰어난 수사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이고 전문까지 수록하여 관리하고 있듯이 특별사법경찰도 모든 수사기록을 집대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이러한 방대한 수사경험이 자료화되어 축적되고 이를 컴퓨터 등을 통해 모든 특별사법경찰권 업무를 부여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열람하여 맡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참고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전문화는 완성단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사가 중단되거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공무원이 잦은 보직 변경으로 타부서로 이동하였을 때 그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수록 철저히 기록을 남겨야 하고, 지금까지 귀중한 수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경험 부족 및 법령적용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자료의 기록화야말로 수사 전문 경험 및 이해도가 낮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화를 위해 꼭 필요하

다 하겠다.

또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특별사법경찰들을 참석하게 하여 현존하는 모든 수사기법이나 기술 등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지식축적이나 수사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수사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모든 특별사법경찰이 정식적인 제도나 절차상으로 수사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자료의 충실한 축적이나 교육과정 참석 외에도 수사력 향상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능범 수사기법 등을 과감히 도입하여 이를 숙달하여야 하며, 자연과학적 지식을 겸비하는 것도 수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특별사법경찰관 개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며, 교육과정이나 특별사법경찰관 선발 시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①신종 지능범죄에 대한 분석제공

현대사회의 범죄는 광역화, 지능화, 흉폭화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는 국제사회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사회적 유대가 약해짐에 따라 범죄가 발생되고, 요즘에는 범행의 동기조차 알지 못하는 무동기성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범죄와 대응해야 한다.

신종범죄는 그 범죄의 형태나, 종류, 유형 등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신기술 혹은 새로운 방법 등에 의한 범죄로 그 수사기법 또한 후자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종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진화에 따라서 징후가 대부분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신종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석하고 연구하는가에 따라 신종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종범죄에 대한 교육이 시시각각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각 특별사법경찰관 개개인은 신종범죄에 대한 의견을 검찰·경찰 조사조직에 통보 및 보고하도록 하고 수사전담 분석연구를 추진하여 그 신종범죄에 대한 정보를 전국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며, 그에 대한 교육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및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과 같은 과학수사전문 특별사법 경찰행정 조직을 신설하여 수사의 과학적 전문화를 이루고, 법 과학 분야의 전문보고서들을 작성하여 특별사법경찰관들의 부족한 과학적 지

식들을 원조하여야 할 것이다.

②교육기법의 다양화

교육은 조직구성원의 일반적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시키는 활동이다. 본래 교육이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뜻하며, 훈련이란 이러한 일반적,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직원이 자기가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는데 그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것을 훈련이라는 용어에만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대규모화, 다양화, 전문화 되어 감에 따라 수사 업무 역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합당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협의의 교육과 병행하여 일반적인 소양과 능력의 개발도 교육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김광일, 2005: 75).

업무에 있어서 개인의 자질 측면에서도 이제 특별사법경찰도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양화, 지능화 되는 국제성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과 전문능력을 가진 전문요원 양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국제화 다변화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과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사법경찰도 외국어 능력을 취득토록 하고 정기 어학검정을 실시하는 한편, 퇴직자들 중 업무능력 우수자를 지도관으로 위촉하여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아울러, 교육수준을 등급별로 차별화하고 또한 교육 방법도 이론 강의를 최소화 시키고 상황처리실습을 확대하여 실제사건과 동일한 상황처리 및 사색적 학습기법을 강화하고 교육체계, 내용, 방법 분석 및 토의를 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대학이나 학술기관에서 주관하는 범죄관련 교육의 참여와 연구회 또는 학회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범죄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겠다.

(2) 수사기법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

일반적으로 범의자들은 범행현장에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가져오거나 범행도중 물리적 증거를 남기게 되어있고 따라서 현장에서의 수사 활동에 임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에 의한 관찰과 탐문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디지털 장비로 수집·분석을 강구한 경찰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 장비는 말 그대로 디지털시대의 장비로써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장비의 기능이 다양하고 사용법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고가의 장비인 만큼 취급에 따라 오작동과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증거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사용을 꺼리게 된다면 수사의 첨단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수사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사의 전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활용을 도모하기위해 신기술의 교육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도록 그 교육과정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위주의 교육을 실행한다고 하나 교육 시 직접 가져온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와 같은 장비로 실습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첨단 장비의 도입 시 다시 교육을 해야 하는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의 인터넷 강좌와 오프라인 출장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인력상지원이 힘든 경우 기기운영관리자를 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첨단화된 수사기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수사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방안

둘째,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가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의 경향 및 인력 및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전자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임 담당자가 처리한 사례를 답습하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기관장 또는 내부 직원들의 무관심과 수사 인력, 수사시설, 전문성 부족 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 수사시설과 장비의 미비는 수사담당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지위비하, 피의자에 대한 위하기능을 떨어뜨려 증거 및 진술확보 등의 수사상 절차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과학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기관 조사실에 준하는 시설과 인신구속을 위한 유치장 등을 완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수사상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특별경찰행정사무는 업무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사항적 제한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긴급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직무적합한 장비가 보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범행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채증장비(카메라, 녹음기, PDA 등)와 각종 수사 장비(지문조회기 등), 사안에 따라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위한 경찰장구류(수갑, 포승, 경찰봉, 전기충격기 등) 등이 적절히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일선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애로사항 중 한 가지가 수사실무와 관련하여 검찰청에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등의 행위가 자유롭지 못하여 수사진행이 어렵다고 한다.

검찰청에서는 형사범을 비롯하여 매우 많은 특별법 위반자를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분주한 곳으로 각 기관에서 사소한 질문이나 상담 등에 낯낯이 응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에 대한 해소 방법으로 검찰청 별도 연락관을 파견근무하게 하여 연락관이 검찰과 수사실무자와의 가교 역할을 하여 원활한 수사 업무 진행을 지원한다면 능률이 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극히 일부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찰청에 연락관으로 근무하면서 수

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 경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7가지 정도로 극히 적은 수의 직무 영역에 한정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전체 행정기관을 따지면, 약 50여개 정도의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이 부여 되어 있다. 이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실무상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프랑스와 같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기관의 수를 축소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리고 올바르게 법치행정 원칙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V. 결 론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범죄 이외의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수사의 전문성, 효율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장소와 사항적인 제한을 두고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특히 사회변화에 따른 특별 분야의 범죄가 증가함으로 인해 특별범의 발생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수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수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전문수사 인력의 부족 및 기본환경 미비, 특별사법경찰업무의 연속성 결여, 검찰·경찰의 수사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송치하는 것보다 검찰·경찰기관에 고발에 의존하는 등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이 특별사법경찰업무로 인하여 업무에 부담으로 인해 일반사법경찰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사의 전문성, 효율성, 신속성 등을 위하여 설립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사법경찰은 특수 업무분야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일반사법 경찰관리에 비해 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 및 검찰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련 행정기관과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수사기법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통해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적 수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전문수사 인력의 강화 및 기본환경의 지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수사 인력과 여건의 부족으로 자신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고, 기구의 축소 등으로 인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기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검찰·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경찰·행정기관·관련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관련회의 및 정보교류, 업무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다.



< 참고 문헌 >

□ 단행본

- 김남진·김연태 공저. (2007). 「행정법Ⅱ」. 서울: 박영사.
- 김형만·신현기·양문승·이영남·이종화·이진권·임준태·전돈수·표창원 공저.
(2007).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 박균성. (2007). 「행정법론-상-(제6판)」. 서울: 박영사.
- 박균성. (2007). 「행정법론-하-(제5판)」. 서울: 박영사.
- 사법연수원. (2007). 「수사절차론」. 서울: 사법연수원.
- 신현기. (2005). 「자치경찰론」. 서울: 웅보출판사.
- 양영철. (2008). 「자치경찰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운근. (2001).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 이재상. (2000).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 홍정선. (2006). 「행정법원론-하-(제14판)」. 서울: 박영사.
- 환경부. (2005). 「환경사법경찰특별교육교재」. 서울: 환경부.

□ 연구 논문

- 김광일. (2005). 「군사법경찰관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민규. (2009).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공법적 고찰-일반행정기관에서 ‘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택수. (2004). 「경찰 수사력 강화방안」.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제6호.
- 김형만. (1996). 「일본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 경찰제도」. 치안연구소.
- 도정석. (2006). 「철도산업 치안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건설교통부 철도

- 공안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철도전문대학원.
- 민형돈. (2007).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0호.
- 백원기. (2003). 「프랑스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 성기현. (2006). 「수사경찰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손동권. (1993).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신향균. (2007).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안」. 치안논총. 제23권.
- 이근우. (2008). 「행정법의 재검토-개념, 구조, 절차-」.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종화. (2002). 「프랑스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3호.
- 유형현 · 김종오. (2008).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9권 제32호).
- 전승수. (2007). 「미국의 특별수사기구, 각국의 특별수사기구 연구」. (검찰미래기획단).
- 전현준. (2003).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과제」. 수사연구 제21권 10호.
- 조성한. (2008).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정부기능의 새로운 모색」. 국가정책연구 제22집 제1호. 서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지진숙. (2008).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황정익. (2002).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제언」. 수사연구.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자치경찰 표준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 기타 자료

상주인터넷뉴스(www.sjnews.co.kr) / 서울신문(www.seoul.co.kr)

인천일보(www.itimes.co.kr) / 중앙일보(www Joins.com)

중부일보(www.joongboo.com) / 한국경제신문(www.hankyung.com)

YTN(www.ytn.co.kr) / 파이낸셜 뉴스(www.fnnews.com)

경찰청(www.police.go.kr)

법무부(www.moj.go.kr)/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사무처. (2007). 「2007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부록) (피감사기관: 대검찰청)」. (일시 : 2007년 10월 31일, 장소 : 대검
찰청 회의실). 8면.



〈 부 록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 삭제 <1981.12.31>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년원 또는 그分院(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分院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전문개정 2008.6.13]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8.6.13]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

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보안법」에 따른 광산보안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과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23의2. 삭제 <2009.4.22>
2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수산물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 사무와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 및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9. 지식경제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지식경제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 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수산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관세사법」 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 위반사범
 -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가. 「대기환경보전법」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다. 「소음·진동관리법」
 -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마. 「폐기물관리법」
 -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사. 「환경분쟁조정법」
 - 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자. 「자연환경보전법」
 - 차. 「환경영향평가법」
 - 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타. 「하수도법」
 - 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하. 「먹는물관리법」
 - 거. 「토양환경보전법」
 -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며. 「수도법」 (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 버. 「지하수법」 (제37조제7호만 해당한다)
 -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만 해당한다)
 - 어. 「야생동·식물보호법」
 - 저. 「악취방지법」
 -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 「습지보전법」
 -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전자과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 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범죄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 20의2. 삭제 <2009.4.22>
-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범죄
 -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산물품

- 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와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및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무단방지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가. 「해양환경관리법」
 -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 「공유수면관리법」
 - 라. 「습지보전법」
 -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 「개항질서법」(제24조만 해당한다)
 - 아. 「어촌·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

[전문개정 2008.6.13]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6.13]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358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60조·제36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8.6.13]

부칙 <제10339호, 2010. 6. 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노동청·지방노동청 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4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00. 6. 1. 법무부예규 제530호>

<개정 2003. 12. 24. 법무부예규 제685호>

<개정 2009. 11. 30. 법무부예규 제914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명 제청 등】 법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소속 관서의 장(법 제7조의2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소속 관서 인사담당관이 기명날인한 인사 기록카드
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지명 제청·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진 1장 (5cm×3.5cm)

제3조 【지명기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유효기간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지청장의 처리】 ① 관할 소속 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

청(추천)서를 접수한 지청장은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과 지명 제청 또는 추천된 자(이하 “지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제청인원의 적정 여부, 지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지명 제청(추천)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 공무원 중에서 당해 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④ 간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심의회가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심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본다.

1.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기소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될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벌금 2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 【검사장의 지명】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고,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장을 경유하여 지명을 제청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지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명서 재발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분실된 지명서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지명철회】 ① 관서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이 있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지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폐기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결정에 대하여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소속 관서장 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는 재차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없다.

제8조의2 【지명 관리실태 등의 점검】 ① 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퇴직 전보 등 변동사항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이행 여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 대상자 및 지명서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관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건처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명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 외에 해당관서의 수사업무를 감찰할 때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세무공무원 등에의 준용】 ①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세무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 또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로, “소속 관서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②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조사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으로, “소속 관서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추천)합니다.

200 . . .
(기관명)장 (직인)

지명제청인원	명										
직급별지명제청인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할지역											
직무범위											
지명제청사유											

※ 붙임 : 지명 제청(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10mm×297mm(일반용지 75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특사경 지명시 수사와 병행할 행정업무 내용			
공 무 원 노 동 조 합 가 입 현 황	가 입 여 부	(가입, 미가입)	
	가 입 노 조 의 명 칭		
	가 입 시 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기관명)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5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의견서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검찰청 ○○지청장 (서명 또는 날인)

의견

※ 부적격자, 사법경찰관리 구성비율, 적정인원, 전년도 업무처리실적 등에 대한 의견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75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장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함

소속관서		
제청(추)원인		
검토사항	부 적 격 자	
	사법경찰관리 구 성 비 율	
	적 정 인 원	
	전 년 도 업 무 처 리 실 적	
	직 무 범 위	
	기 타	
종합의견		
200 ○○검찰청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75g/m²(재활용품))

《비 고》

1. 지명서의 번호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 ① 사진 : 5cm × 3.5cm
- ② 철인 : 직경 2cm (발급기관명 각인)
- ③ 직위(직급) 및 성명
- ④ 소속기관
- ⑤ 발급번호
- ⑥ 직무범위
- ⑦ 발급기관장의 명의
- ⑧ 발급기관장의 각인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크기(포인트)	종류
앞 면	발급기관	11	휴먼고딕(진하게)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11	"
	직위(직급) 및 성명	10	신명조
	소속기관	10	"
뒷 면	발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10	"
	지명문구	11	휴먼고딕(진하게)
	직무범위	11	신명조(진하게)
	직무범위 내용	10	신명조
	발급일자	10	"
	발급기관장 명의	10	신명조(진하게)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로 한다.

4.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는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는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6. 색상은 연한 청색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아래 사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기관명)장 (직인)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발 급 신 청 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75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아래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를 신청합니다.

200

(기관명)장 (직인)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 명 서 발 급 일 자		
철회 신청 사유		

※ 붙임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75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점 검 결 과 보 고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이행 여부, 업무처리내역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검찰청 ○○지청장 (서명 또는 날인)

점 검 대 상	
점 검 사 항	“ 별 첨 과 같 음 ”
점 검 결 과 및 조 치 의 건	

210mm×297mm(일반용지 75g/m²(재활용품))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s Investigative Power

Jeong-Yun, Ko
Dept. of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Chin-Yeol, Nam)

Today's society is changing very fast and developing through complicated interactions.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knowledge society, international exchange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This globalization, however, doesn't always lead to positive effects. Due to the rapid changes in modern society and the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different types of crime including motiveless crime, juvenile crime, and high-tech crime is increasing. Moreover, they are getting not only more outrageous but also more massive, involving a wide area.

Such changes require the specialties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criminal justice area. The lack of expertise doesn't allow the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ials to investigate crimes efficiently and appropriately. As a solution, we are operat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hich empowers government officials in different sectors to investigate crimes on their sectors with Judicial Police Powers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security service for the citizens.

Therefor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 needs to make its efforts to provide the citizens with a high level of investigative service. For this matt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 should improve its investigative powers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on specific sectors.

To have investigations specialized, firstl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 should foster professionals. Secondly, through the continuous education for investigative skills they should develop their expertise for investigations so that they can provide the public-oriented police-administrative service.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engaged in investigations.

Improv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s investigating power cannot be considered as an abuse of human rights or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policy for the citizens. It can benefit the public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 improves its investigative power.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can strengthen their status as professionals for investigations by striving to improve their investigating power.